

과업지시서

(공사명: 한국세무사회 회관 승객용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2021. 04.

한국세무사회

목 차

I . 공사개요	1
II . 일반사항	1
III . 승강기 제원	2
IV . 계약조건	2
V . 안전관리	4
VI . 공사의 범위 및 세부사항	5
VII . 기타사항	6

I. 공사개요

- 가. 입찰건명 : 한국세무사회 회관 승객용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 나. 공사현장 : 한국세무사회 회관<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당로 105(서초동)>
- 다. 공사기간 : 상호협의를(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 체결)
- 라. 기초금액 : 115,000,000원(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 포함)

II. 일반사항

- 가. 본 과업지시서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필수항목 보장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 나. 본 과업지시서의 발주자는 한국세무사회(이하 '본회' 라고 한다)를 말하며, 공급자는 낙찰 받은 업체를 의미한다.
- 다.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 라. 승강기 안전장치설치에 관한 과업지시서와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가 고시한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마. 공급자는 본회의 요구대로 과업지시서가 의도한 바와 같이 완전하고 안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엘리베이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Ⅲ. 승강기 제원

가. 용도 및 수량: 장애인용 1대, 승객용 1대 … 총 2대

다. 상세규격

항목 \ 구분	장애인용	승객용
정격하중 및 인승	1000kg/15인승	750kg/11인승
정격속도	60m/min	60m/min
제어방식	VVVF	VVVF
운행층수	7STOP (B1~6F)	7STOP (B1~6F)
도어방식	센터 오픈 개폐식	센터 오픈 개폐식

마. 공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문서를 통한 질의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보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Ⅳ. 계약조건

가. 정밀안전검사 기준의 안전장치 설치가 되어야 하며, 총 엘리베이터 2대 (장애인용, 승객용)의 공급금액으로 공급자의 책임 하 보강공사를 진행한다.

나. 작업 순서는 본회와 협의 후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공사기간 중에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된 금액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라.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1) 승강기 보강공사 비용

2)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실이나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 등을 설치할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 비용

마. 보강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장소 등 필요한 가설물이 있을 경우 본회와 협의하여 가설하며 장소는 필요시 본회가 제공하기로 한다.

바. 공급자는 본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보강공사를 알리기 위한 알림 표지판을 승강기 입구 안내 표지판에 게시하여 본회 내방객들의 안전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사. 준공 시 제조사의 순정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본회에게 즉시 제출하도록 하며, 이 외에 본회에 사용되는 부품 중 인증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내용 변경을 요할 경우 본회의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시공 전 승인사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2) 신기술 및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승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회가 인정하는 경우

자.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반드시 공인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한국산업규격, 국제전기표준, 유럽전기표준, 기타 관련규격)에 따른 표준규격을 따라야 한다.

V. 안전관리

- 가. 공급자는 본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필히 대책과 대응을 지체 없이 수립하여야 한다.
- 나. 화재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소 또는 용접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함은 물론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개구부에는 안전보호장치를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 다. 공사 도중 기존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교체 완료가 되기 전까지 원상회복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라. 공급자는 가능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소음 및 분진발생 등의 요소를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마. 본회의 감독관이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이나 작업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 바. 공급자는 현장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 사. 공급자는 본 공사의 작업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아. 본회의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은 금지한다.
- 자.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 및 폐자재는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차.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도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여 안전관리에 힘써야한다.
- 카.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게 제출한다.

VI. 공사의 범위 및 세부사항

본 공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손 끼임 방지장치

- 승강장 문, 카 문 어린이 등의 손끼임 방지수단으로써 승강장, 문짝과 문설주 사이 틈새를 5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이중 브레이크

- 카가 정격속도로 정격하중의 12%를 싣고 하강 방향으로 운행될 때에 구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기계적 부품은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로프 브레이크 (국가 인증품 인증서 제출)

- 상속과속 방지기능
 - 고장으로 카의 이상 가속 움직임(상승 및 하강)을 감지 시 카를 비상으로 정지하는 기능이 설치되어야 한다.
 - 이를 구현하기 위해 부품과 호환되는 정품 인쇄회로기판(PCB)을 설치하여야한다.
- 개문출발 방지기능
 - 승강장문 잠김 또는 카 문이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카가 출발 시 이상 움직임을 감지하고 정지시키는 기능이 설치되어야 한다.
 - 이를 구현하기 위해 부품과 호환되는 정품 인쇄회로기판(PCB)을 설치하여야한다.

라. 자동구출장치

- 정전 등으로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이 설치되어야 한다.
- 운행조건으로는 문 열림 10초 이상, 문 닫힘 20초 이상 대기 후 Shutdown, 문 열림 버튼 1회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 이를 구현하기 위해 부품과 호환되는 정품 인쇄회로기판(PCB)를 설치하여야한다.

마. 승강장 문 이탈 방지장치 (국가 인증품 인증서 제출)

- 승강장문의 조립체는 450 J의 운동에너지(유효 출입구 면적의 50% 이상이 유리로 된 경우 308 J 적용)로 충격을 가했을 때 승강장 문의 이탈 없이 견뎌야 한다.
- 국가 공인기관인 KTL(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을 통하여 충격 시험에 합격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바. 승강장 문 비상가이드

- 승강장 문의 가이드가 마모 및 부식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승강장 문이 올바른 위치에 유지되도록 하는 가이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사. 기타 노후시설 교체 공사

- 권상모터, 제어반, 기구박스 및 도어머신 교체
- 주행케이블, 승강로 전선, 카 위치표시기 및 조작반 교체
- 승강장 버튼, 위치표시기, 도어 판넬 교체 등

VII.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한국세무사회 업무지원팀 김정민 대리(02-521-9451). 끝.